

보행자교통사고와 안전대책

이 순 철
(도로교통안전협회)
(안전운전연구실장)

I. 서 론

자동차는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활공간을 확대시켜 주며, 현대생활에서 의식주와 더불어 이동(移動)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생활요소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교통사고,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통참가자가 교통상황이나 교통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 교통생활에서, 정신적 혼란상황인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이순철, 1993a).

최근 몇년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보행자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고 고령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국도 등 시가지 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트럭, 경운기, 자전거, 자동차 등의 여러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혼합교통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도와 보도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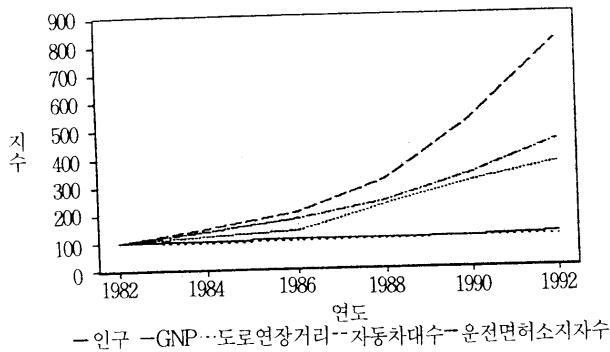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행자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교통상황을 도로현황과 교통사고 추이를 사회지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고, 교통사고의 특징을 고찰하면서 보행자사고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본 후, 보행자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분석에 근거한 안전대책을 고찰해 본다.

II. 교통환경과 교통사고의 현황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총연장거리

◁ 집중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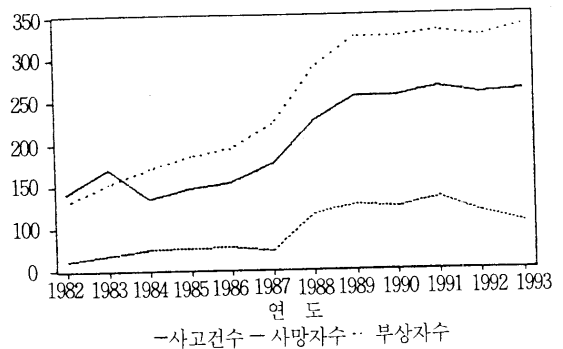
의 증가는 미미한데 비하여, 자동차와 면허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82년도에 646,996대였던 자동차등록대수가 1992년도에 8배이상 늘어난 5,230,894대로 매년 약 23.2%씩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최근 몇년간 급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면허인구는 1982년 2,581,310명에서 1992년에는 11,613,300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4.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인구가 1,161만명인데 비해 자동차등록대수는 523만대뿐이므로, 당분간 자동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운전면허인구도 완만하겠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93년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6,274,008대, 면허인구 13,301,61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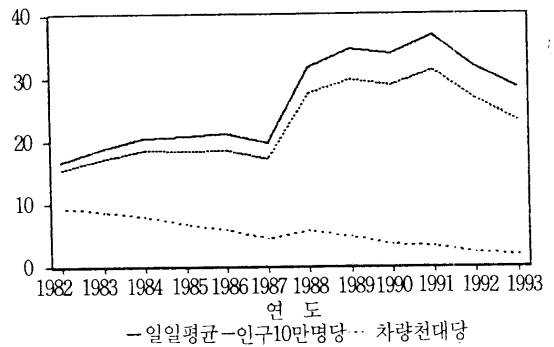
[그림 1] 교통관계지표의 변화(1982년을 100으로 기준)

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매우 뒤떨어진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1982년 141,218건에서 1993년에는 260,92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982년 6,110명에서 1991년 13,429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992년에는 11,640명,

1993년에는 10,402명으로 사망자수는 감소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뚜렷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고 감소경향이 시작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1993년도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337,679명으로 1982년의 130,603명의 약 2.5배 증가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교통사고 변화추이(사고건수 단위는 1,000건, 사망자 단위는 100명, 사상자 단위는 1,000명임)



[그림 3]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변화

한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계속 감소하

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1982년 2,183건에서 1988년에는 1,106건으로 그리고 1993년에는 41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2년 94명에서 1993년에는 1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그림 3).

그리고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 1>이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13.7%, 독일 18.5%, 영국 32.7%, 일본이 27.3%인데 비하여 한국은 47.6%로 여전히 5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분석 결과, 보행자교통사고의 약 70%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횡단중에도 10%~14%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이순철, 1994).

<표 1> 보행자사고 사망자비율의 비교

국 가	미 국	독 일	영 국	일 본	한 국
보행자 사망비율	13.7%	18.5%	32.7%	27.3%	47.6%

주: 한국과 일본은 1992년도 통계수치

독일(서독), 영국과 미국은 1991년도 통계수치

Ⅲ. 보행자사고의 특징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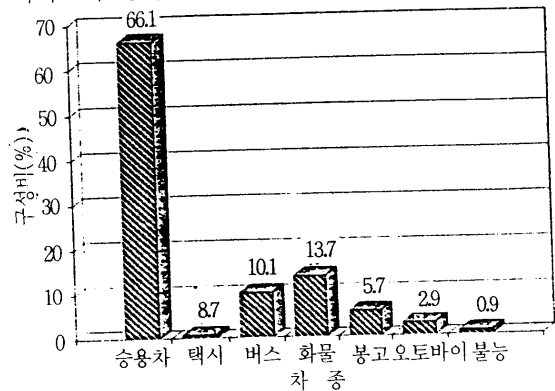
1. 보행자사고

보행자교통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의 3개 지역(강남, 영등포, 서부경찰서 관할지역)과 경상

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546건을 정밀분석하였다(도로교통안전협회, 1993). 분석결과 중에서 차종, 차선수, 발생지역, 연령 등에 따른 보행자사고 특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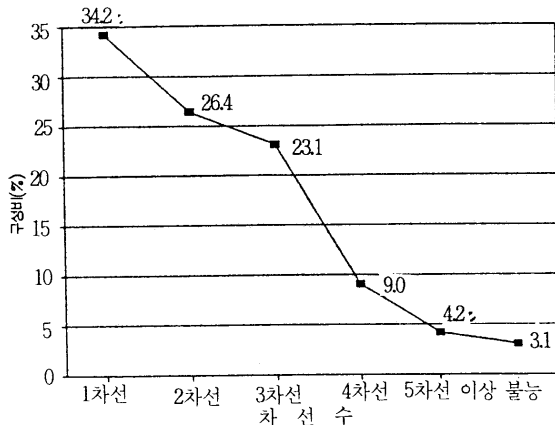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종별 보행자사고를 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546건중 361건으로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물자동차가 75건으로 13.7%, 버스 5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66.1%), 화물(13.7%), 버스(10.1%)순으로 전체 보행자사고의 89.9%가 이들 차종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차선수별 보행자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전체 546건중 187건이 발생하며 34.2%를 차지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44건 26.4%,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26건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사고가 혼합교통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상의 보행자와 각종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행자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보행자사고의 차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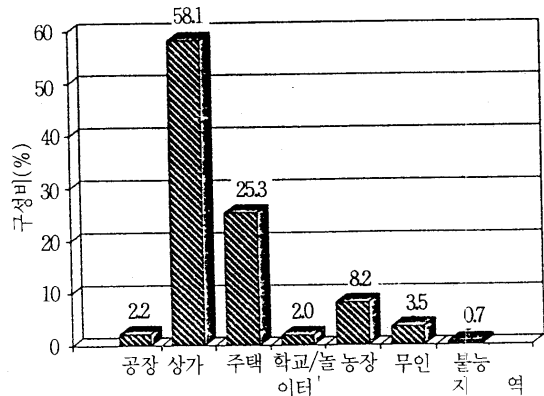
보행자교통사고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 의해 많이 발생하며, 편도 1차선의 생활도로와 국도 등의 상가지역과 주택가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1세 이상의 연령층과 14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자사고가 많다



[그림 5] 보행자사고의 편도차선수별 분포

[그림 6]은 지역특성에 따른 사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가지역에서 317건이 발생하여 58.1%로 가장 높고, 주택가는 138건으로 25.3%의 높은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상가(58.1%), 주택가(25.3%)의 두지역이 전체 보행자교통사고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가와 주택가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 즉, 횡단보도, 육교 및 가드레일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속운전 등 운전 부주의가 중복되었을 때 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7]은 보행자의 연령에 따른 사고분포를 부여주고 있다. 61세 이상의 노령층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연령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며, 나아가 사회활동 연령이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고령자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제 시작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고가 7.6%로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14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한 보행자교통사고가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통환경과 차량특성에 대한 이들의 이해부족과 운전자의 보호의식 부족에서 기인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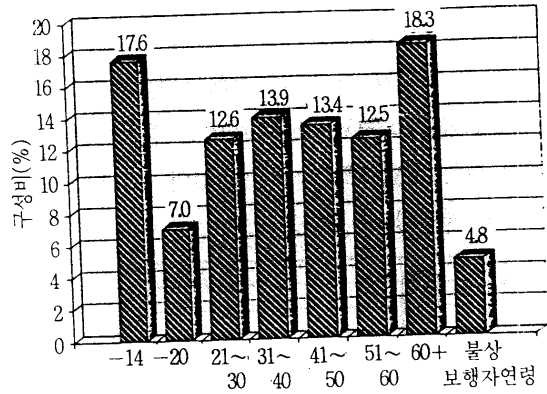


[그림 6] 보행자사고의 지역특성별 분포

〈표 2〉와 〈그림 8〉은 보행자연령과 차선수의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편도 1차선도로에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전체 184건중 60건이 발생하여 32.6%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이 19.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편도 2차선도로에서 61세 이상의 보행자가 전체 140건중 31건을 차지하여 22.1%로 나타났고, 편도 3차선도로에서는 31세~40세 보행자와 61세 이상 보행자가 121건중 각각 27건을 차지하여 2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편도 1차선도로에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자사고가 많고, 편도 2차선에서는 61세 이상 보행자사고가 많으며, 편도 3차선에서는 30대와 61세 이상의 보행자사고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546건의 보행자사고분석을 요약해 보면, 보행자교통사고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 의해

많이 발생하며, 편도 1차선의 생활도로와 국도 등의 상가지역과 주택가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1세 이상의 연령층과 14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자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보행자사고의 보행자연령별 분포

〈표 2〉 보행자사고의 보행자연령과 편도차선수와의 교차분석결과

보행자연령 차 선 수	-14	-20	21~30	31~40	41~50	51~60	61+	불 상	전 체
1 차 선	60	7	24	14	18	24	36	1	184
2 차 선	13	13	18	22	22	17	31	4	140
3 차 선	13	9	15	27	14	16	27		121
4 차 선	3	7	6	6	11	9	5		47
5 차 선 이상	6	2	4	4	3			1	20
전 체	95	38	67	73	68	66	99	6	512
구 성 비	18.6	7.4	13.1	14.3	13.3	12.9	19.3	1.2	100.0

*. missing data=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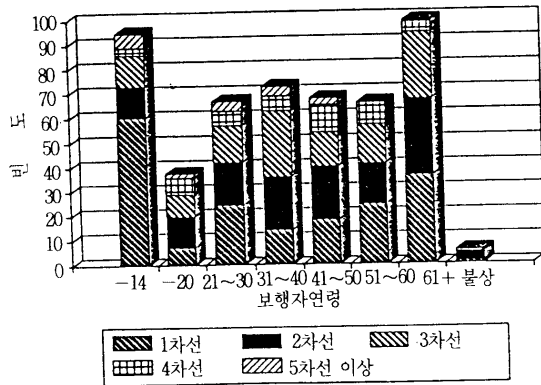
〈표 3〉은 보행자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며, 서울(관악구)에서 발생한 927건중 행동유형의 분류가 곤란한 528건을 제외한

399건의 보행자사고형태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 1990, 이순철, 1993b).

횡단보도 이외의 곳에서 횡단중에 사고를 당한

◁ 집중연구 ▷

경우가 220건으로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도상에 보행자가 서있거나 작업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58건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횡단중에도 83건의 보행자사고가 발생하여 20.8%를 차지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는 다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도 횡단보도 이외에서 횡단하는 경우와 둘째는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8] 보행자 사고의 보행자연령과 편도차선 수와의 관계분포

그리고 차도상에서 기타 행위중 사고와 연결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가 택시승차를 위해 도로에 내려와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약 70%가 보행자임을 감안할 때,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도로교통안전협회(1993년)에서 조사한

서울지역(강남, 서부, 영등포지역)의 1992년 발생한 보행자교통사고 344건의 분석을 보면, 도로상에서 보행자가 고의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238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농촌과 소도시지역(경기도 화성군)에서 1991년 발생한 화물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 118건을 보더라도(이순철 등, 1992),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교통사고가 83건으로 전체 118건의 70.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사고발생전 보행자 행동유형별 보행자 사고

행 동	구 분	사고건수	구성비(%)
횡단보도를 횡단 중		83	20.8
횡단로 이외에서 횡단 중		220	55.1
차를 밀거나 손짓하는 중		2	0.5
승하차 중		8	2.0
차도상에서 일하는 중		4	1.0
차도상에서의 기타 행위		32	8.0
차도상에 서 있는 중		22	5.5
차도상이 아님		28	7.0
합 계		399	100.0

2 보행자사고 원인

도로교통안전협회(1993)가 정밀조사한 서울(강남, 영등포, 서부지역)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보행자교통사고 546건중에서 사고원인 분석이 용이치 않은 63건을 제외한 483건을 분석한 결과로 보행자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

고자 한다.

〈표 4〉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사고 246건의 사고 원인을 보행자와 운전자의 행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보행자의 사고원인 행동을 살펴보면, 좌·우 방향관찰을 태만히 한 보행자의 행동이 사고 원인으로 분류된 것이 89건으로 전체 사고원인행동 342항목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한건의 사

고원인으로 2개 이상의 원인행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사고원인행동도 2개 이상의 문제행동이 복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건수는 246건이지만 사고원인 행동수는 보행자 342행동, 운전자 505행동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뛰어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19.0%,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2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전자가

〈표 4〉 보행자 무단횡단사고의 사고원인행동

보행자 행동	빈도	%	운전자 행동	빈도	%
1. 좌·우관찰 불량(차량못봄 포함)	89	26.0	1. 발견지연	142	28.1
2. 뛰어서 횡단 중	65	19.0	2. 과 속	139	27.5
3. 갑자기 출현	69	20.2	3. 관찰불량	78	15.4
4. 음주보행	36	10.5	4. 급 제 동	44	8.7
5. 신호에 맞춰 횡단 중	17	5.0	5. 보행자못봄(예상못함)	49	9.7
6. 차량속도 판단실수	15	4.4	6. 보행자가 피하겠지	14	2.8
7. 차량이 피하겠지	15	4.4	7. 신호만 주시	10	2.0
8. 느린 보행	14	4.1	8. 주변차량 관찰불량	10	2.0
9. 기타(중앙선부근 주춤거림, 시야장애 등등)	22	6.4	9. 기타(빗길, 시야장애, 경적, 중앙선침범, 주변차 피하다 등)	19	3.7
계	342	100.0	계	505	100.0

보행자가 음주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10.5%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음주보행도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집중연구 ▷

불 때는 보행자가 갑자기 출현하였을지 모르지만, 보행자는 정상적인 속도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려 하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보행자가 음주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10.5%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음주보행도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사고원인행동을 분석해 보면, 사고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28.1%이며, 운전자의 과속이 27.5%로 가장 많았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무단횡단자가 있으리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방의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보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과속운전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가지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시속 40~60km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량이 한산하다 싶으면 이보다 더 높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50건의 사고원인을 보면, 보행자의 원인행동으로는 신호위반 23.2%, 녹색점멸중에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행동으로는 신호위반이 33.3%로 가장 높고, 과속이 27.4%로 나타났다. 보행자입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혹은 무사히 횡단가능하다라고 판단하여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가 점멸중일 때 무리하게 횡단보

도에서 횡단하게 되며, 운전자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운전자의 사고원인행동과 보행자의 사고원인행동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쪽이라도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하였다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신호무시와 과속이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로 이러한 행동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54건의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라는 생각으로 좌우확인을 잘 하지 않고(전체의 37.0%), 그리고 운전자가 일단정지 서행을 무시한 과속운전으로 인하여(전체의 44.0%) 사고에 휘말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는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사고 927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사고원인이 확실히 규명된 운전자행동 215건과 보행자행동 260건을 재구성한 것이다(교통개발연구원, 1990. 이순철, 1993b).

운전자의 신호위반(33.5%)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19.1%)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자의 문제행동으로는 부당한 횡단이 63.1%로 가장 높고, 도로상에서 놀고 있다가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차도보행이 1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이면도로, 일반국도

주변의 상가지역 및 주택가 등 혼합교통지역에서의

차도와 보도의 구분과 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어린이가 자유

- 스텝게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요망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행동이 더욱 요망되며, 특히 운전자의 과속운전이 중요한 사고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표 5〉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원인 행동

사고원인별 보행자 사고(운전자 측면)

사고원인 \ 구분	사고건수	비율(%)
신호위반	72	33.5
중앙선 침범	3	1.4
후진 위반	4	1.9
과 속	1	0.5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	41	19.1
무면허 운전	14	6.5
음주·약물	9	4.2
사고도주	55	25.6
사망사고	16	7.4
합 계	215	100.0

사고원인별 보행자 사고(보행자 측면)

사고원인 \ 구분	사고건수	비율(%)
차도보행	30	11.5
무단횡단	164	63.1
주 취	5	1.9
노상유회	61	23.5
합 계	260	100.0

IV. 보행자사고 안전대책

보행자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Brackett, 1993, 이순철, 1993b).

-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 이면도로, 일반국도 주변의 상가지역 및 주

◁ 집중연구 ▷

택가 등 혼합교통지역에서의 차도와 보도의 구분과 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요망된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행동이 더욱 요망되며, 특히 운전자의 과속운전이 중요한 사고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횡단보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는 것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행동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소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도로구조상 혹은 교통신호관리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즉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선도로 등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과 자동차의 통과를 입체 분리시킬 수 있는 지하도와 육교의 설치가 시급하다. 교통부의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1992~1996)의 추진계획에도 지하도 및 육교설치를 87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TSM개선사업시 보행자의 통행에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야 하며, 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행동을 올바르게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즉, ①횡단보도정비 ②지하도, 육교의 확충 ③횡단방지용 가드레일 설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로는 무엇보다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요청되며, 운전자의 야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사경, 조명시설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가도로에서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표지와 과속방지장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서행을 유도하여야 하고 야간운전시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 개선 확충되어야 한다.

2. 혼합교통지역 안전대책

자동차의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면도로 및 일반국도에서, 지역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합교통 도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차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방통행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재구성이 요청되고 있다. 외국의 도로계획 내지는 도시계획이 가지는 장점을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면도로 등을 도로교통체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상가지역과 주택가 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 연구(1990)에서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학교지역 및 통학로는 시속 20km로 제한토록 제안하였다.

우리 현실에서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으

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시속 50km~60km 이상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과속운전의 문제점은 한국의 교통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감속해야겠다는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만 지도단속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가 과속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특히 과속방지턱, 시각적으로 감속효과를 일으키는 시설도입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①차도와 보도의 물리적 구분 ②일방통행제의 확대 ③과속방지대책 ④주차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 안전교육

보행자안전교육은 크게 나누어,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육, 61세 이상의 고령자안전교육, 그리고 청장년층의 안전교육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행자교통사고의 원인을 보행자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첫째, 운동능력과 감각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고인데,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자교통사고는 여기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교통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대중화의 역사가 아직 일천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태도형성이나 행동교정을 위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통장면에서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보행자로서의 행동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나 거리관계에 대한 확실한 행동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

주변에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도로가 생겼을 때, 보행자의 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보행자의 도로장면에서는 적응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자신의 기존판단기준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자동차의 속도와 횡단거리 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생활주거환경이나 생활형태 등을 무시한 횡단보도의 설치, 신호주기, 교육설치 등이 보행자로 하여금 무단횡단하게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의 행동특성과 사고특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소극적 교육이 아니라 어린이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령자는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주 짧기 때문에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노인대학, 노인정 모임 등을 통하여 보행자로서 기본적인 행동규칙과 도로횡단시의 문제점 등을 교육시켜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보행자사고 방지는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방지에 도움이 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보행자사고방지 요령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보행자교통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것이 교통사고 특성 분석에서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운전교육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어린이, 고령자, 운전자 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보행자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시험전에 운전자가 받고 있는 자동차 학원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 전체
교통안전의식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보행자우선의 교통통행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사실이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빨리 발견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사고방지의 지름길이다. 보행자가 횡단가능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 어떻게 감속하고 위험 돌발사태에 대처할 것인가를 훈련을 통해 습관화시켜야 한다. 또 운전자는 보행자보호를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가 보행자우선으로 운영되어야겠다.

운전자교육은 면허취득전 교육과 면허취득후의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면허취득전의 자동차학원 교습과정에서 보행자보호를 위한 안전운전 태도와 기능을 운전자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면허취득후에 이루어지는 신규면허취득자 교육, 법규위반자 및 사고야기자 교정교육, 면허갱신시에 행하는 교육,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 등에서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교과내용과 방법을 신중히 연구검토하여야 한다.

V. 결 론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50%수준이라는 사실은 교통문화 수준이 아직

충분한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행자교통사고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해 본결과, 상가지역 및 주택가지역을 통과하는 이면도로, 일반국도 등 혼합교통지역에서 보행자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중요한 사고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신호무시와 과속운전을 보행자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보행자 사고뿐만 아니라 신호무시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전반의 가장 무서운 사고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행자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한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시급하며, 특히 이면도로와 국도 등 혼합교통지역에서의 안전속도 유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과 엄격한 운영이 요청되며,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체계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학교지역 및 이면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내려야 하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전환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운전교육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어린이, 고령자, 운전자 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보행자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시험전에 운전자가 받고 있는 자동차 학원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 전체 교통안전의식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보행자우선의 교통통행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선진국은 보행자교통사고 수준이 그 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다목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Brackett. R. Q. Pedestrian Risk and Risk reduction measures in other coun-

tries, '93 도로교통안전 심포지움, 도로교통안전협회, 1993.

- 도로교통안전협회. 보행자 태도 및 교통행동 분석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대책, 1993.
- 교통개발연구원. 보행자감소대책에 관한 연구, 1990
- 이순철·정혜욱, 화물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교통안전연구논집, 도로교통안전협회, 1992, 137~145.
- 이순철, 안전운전과 교통심리, 한국가이던스, 1993a.
- 이순철,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과 감소대책, '93 도로교통안전 심포지움, 도로교통안전협회 1993b, 1~19.
- Lee Soon-Chul, Pedestrians safety in Korea, IATSS Research, 1994, vol. 18. 23~30.

자기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1. **확난 재 말이는 논쟁에서는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2. **상대방의 행위를 분석하라**
3. **남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4. **더 오래 냉정을 유지하고 침을 수 있으면 당신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5. **자신의 생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라**
6. **의견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7.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남의 화를 돋우기에 열심인 사람들과는 멀러라**
8. **거부해야 할 사람은 거부하라.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 미국도 자전거순찰

☒ 첨단과학 선진국 미국의 새로운 순찰 방법

21세기의 문턱에 선 90년대에 첨단과학의 선진국인 미국이 새로운 순찰방법으로 자전거 순찰을 시도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시도의 단계를 넘어 전 미국에 걸쳐 600개의 경찰활동단위에 자전거순찰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6·70년대 우리경찰의 주요 순찰수단이었고, 얼마전 새로이 그 효과를 기대하며 다시 시도되었다가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건, 자체의 모순 때문이건간에 활성화되지 못한 자전거 순찰이 왜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과학선진국 미국에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가? 또 미국경찰은 원시적일지도 모를 자전거순찰로부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 미국경찰의 자전거순찰 시도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자전거순찰의 시작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90년대들어 HCCS(Houston Community College System)에 근무하는 Luther Odom에 의해 기안되었으며 뉴욕시와 오칼라 및 플로리다 경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 경찰은 자전거순찰이 경찰관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시민에 의해 쉽게 목격되어지는 가시성, 시민에 대한 즉각적 반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새로운 신뢰감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다양한 기동력과 인간적 접근이 가능한 순찰

자전거순찰을 실시하는 미국의 경찰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전거는 순찰차가 순찰할 수 없는 장소 즉 알방통행로의 차량순찰이 어려운 좁은 길과 산책로, 보행자 전용상점가, 빌딩의 로비 등을 아무런 장애없이 순찰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내의 경찰관으로서의 취할 수 없는 다양한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차량과는 달리 범죄자에 대한 기도비익(은밀한 접근)이 가능하여 경찰관의 범죄제압능력을 향상시킨다.

그외에도 자전거순찰은 시민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가능케하여 친밀한 지역경찰활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자전거순찰의 기안자 Luther Odom도 “우리는 첩관과 유리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정한 경찰관일 수 있다”고 자전거순찰의 또다른 장점을 강조하였다.

☒ 자전거순찰의 범죄예방 및 검거실적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 장점들은 뉴욕시 경찰의 자전거순찰 실시 첫 6개월 동안의 실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뉴욕경찰은 이 기간동안 자전거순찰활동을 통하여 18정의 총기를 회수하였고 마약과 관련하여 11,250달러와 414벌(decks)의 헤로인, 65자루(bags)의 마리화나 등을 압수하였으며 156명의 중범죄자를 체포하였고 211명의 경범죄자와 488명의 우범자를 체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오칼라와 플로리다 경찰도 지방자전거클럽을 통한 간단한 훈련을 통하여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자전거순찰을 통한 장비와 예산절약적 효과

장비는 자전거순찰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과거에는 말을 탄 보안관이, 현대에는 고급순찰차를 타고 있는 경찰관이 익숙한 미국시민이나 미국경찰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순찰의 장비는 관심만큼 특별하지 않다. 자전거순찰은 굳이 고급스런 과학적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Odom도 고질의 장비를 피할 것을 주장한다. 쉽게 고장날 수 있고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이다.

뉴욕경찰은 가벼운 산악용 자전거를 도입하여 야간순찰을 위한 헤드라이트와 자전거 뒷 편에 간단한 선반만을 장착했다. 특히 Trek자전거회사는 순찰을 위해 별도로 고안한 산악용 자전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자전거순찰장비는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에 비하여 매우 간단한 장비이고 따라서 자전거 1대당 연간 평균유지비용은 100달러에 불과하다.

☒ 자전거순찰을 위한 교육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에 비해 자전거순찰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치 않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자전거를 타고 간단한 방법과 자전거를 타고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손쉬운 기술만 습득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경찰은, 과거 자전거가 주 순찰수단이었던 우리경찰이 자전거순찰을 위한 교육훈련이 전무했던데 비해,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자전거를 다루는 기술(자전거의 정지, 자전거 타고 층계 오르기, 피의자 정지 시키기), 보수정비, 긴급기동방법과 집단순찰, 야간순찰 등이 그것이다.

□ “브래디법(Brady Law)”의 시행을 위한 미국 연방, 주, 지방의 법집행단위들간의 협조

☒ “브래디법”의 제정배경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총기소지권리를 폭 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악용되어 시민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범죄와의 싸움을 전 미국적 과제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범죄가 총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기폭력의 예방은 범죄예방의 선결과제였다. 이와같은 대범죄정책의 일환으로 브래디 권총폭력방지법이 상정되었고 '93. 11. 30일 클린턴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하여 '94. 2.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 총기통제법(Gun Control Act)만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

브래디법은 1968년 총기통제법 제정 이후 가장 의미있는 총기관련 입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1968년 이래 미국의 ATF(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는 모든 총기제작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들을 총기통제법만으로 규제해왔으나 총기소지의 적격성 여부를 연방공인판매상의 단순조사에 의존함으로써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총기구입을 위한 5일의 유예기간

새로이 제정된 브래디법은 총기의 판매구입시에 총기구입자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기간으로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는(특히 총포제작, 판매상 등 직접적 이해가 걸린 미국인) 대단한 기본권의 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절차는 잠정적 절차일뿐, 향후 5년안에 즉각적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브래디법”시행에 있어서 연방, 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브래디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법 그 자체보다도 고도로 지방자치화되어 있는 미국의 법집행기관들이 범죄경력조회 등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업무를 상호 분담하고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브래디법”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인 유예기간 동안의 범죄경력조회를 어느 법집행단위가 수행할 것인가? 연방법집행기관인 ATF가 할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나 그 아래의 지방정부에서 담당할 것인가?

우선 연방정부는 거리와 시간, 인력의 제한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중앙화된 주정부가 행할 경우 광범위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방정부가 담당할 경우 최신 자료에 의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서로가 반대의 단점을 가진다.

결국은 중앙화된 주경찰이 광범위한 조회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은 완벽한 최신정보를 주정부에 제공하여 보다 철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물론 주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총기관련 법집행기관인 ATF의 역할은 연방공인판매상들에게 새 법의 주요내용, 필요한 소정양식 및 새로운 규제사항 등을 알리고 주와 지장의 관련 법집행부서를 교육하며 총기관련 판매상, 제작자, 구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는 등 “브래디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주와 지방을 최대한 지원할 임무를 진다.

☒ 지방정부의 지지하에 “브래디법” 제정

동 법안이 국가화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조아래 성공적 시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법 자체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법집행공무원들의 강력한 지지하에 제정되었고,

유예기간에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법집행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효율성?

고도로 자치화된 미국에서 “브래디법”의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ATF, 주정부, 지방정부의 각 법집행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의 다양성확보와 함께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의 법 또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단위들간에 많은 합의와 협조를 필요로 하므로, 시의적절한 정책의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과 명령이나 지휘가 아닌 협조에 의한 법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브래디법”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가 성공적 시행의 주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완벽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진국 첨단 수사장비 소개

총경 김 재 동
(교통대책연구실장)

첨단과학장비의 개발이 날로 거듭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 과학분야, 의료분야, 군사분야 등을 망라한 전문분야에 걸친 눈부신 발전과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범죄수사에도 첨단과학장비를 개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로 영원히 존재하여야 한다는 선진외국경찰의 의지와 최신 하이테크수사기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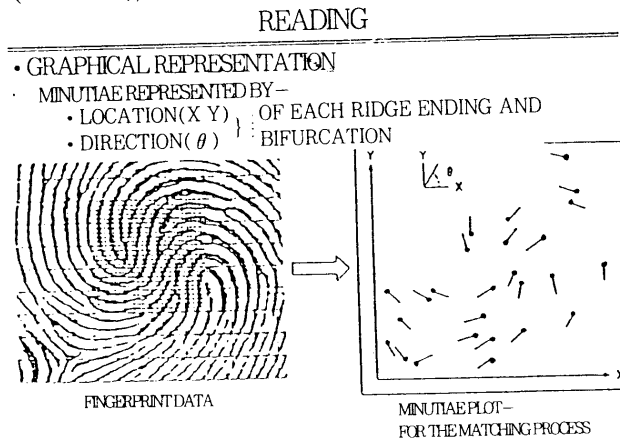
1. 지문자동검색컴퓨터 시스템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AFIS시스템은 수집된 개인의 지문자료를 전산화하여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을 1초에 약 1,200개의 지문을 검색하고 몇시간 후에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문을 색출, 전문감식요원이 확인 범인을 검거토록 인적사항을 회보한다.

미국 → FBI에서는 80년초부터 3,000만명의 지문원지를 국가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6억6천백만불(한화 5천4백억원)을 투자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개주 대규모경찰서 자체에서도 별도 AFIS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년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을 속속 해결하고 있다.

- AFIS시스템 구축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MORPHO), 일본(NEC), 한국(유니온시스템)



2 유전자(DNA) 개인식별 감식

강간, 살인 등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액, 혈흔, 침, 체모 등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핵심물질인 DNA가 사람마다 구조가 서로 다른점을 착안, DNA의 미세한 조각들을 수퍼마켓의 “바코드”와 비슷한 모양의 이미지를 생성시키는데 사용되고 이 이미지는 용의자의 DNA와 육안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

작성하는데 수주일이 걸리고 샘플 하나당 수천달러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점차 신속하고 저렴한 경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DNA표본이 일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값을 확률은 수백만분의 1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은 현재까지 700여명의 범인을 확인하는데 사용해 왔다.

- 전처 살해혐의로 재판중인 왕년의 미식축구스타 “O.J. 심슨”의 경우도 현재 진행중인 DNA테스트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Alec J. Jeffreys박사에 의해 1986. 2. 4 DNA개인식별법이 최초로 논문발표됨.

3 탄흔 감식컴퓨터 시스템 (Bulletproof Computer System)

미국 FBI와 총기국은 특정한 총이 남기는 총탄이나 탄피의 특징인 탄흔을 AFIS(자동지문식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총알의 탄도특성을 360도에서 분석, 이를 데이터 베이스 내의 정보와 비교하여 동일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우리는 일개소대 정도의 전문가들이 힘들게 해온 작업을 자동화를 통해서 손쉽게 해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12월 이후 워싱턴시에서 벌어진 수십건의 총격사건을 해결하였다.

4 음성분석기 (Voice Spectrograph)

녹음된 음성의 주파수, 파장, 톤(tone) 등을 분석하여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를 다른 음성 데이터와 비교하여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고 있음) 용의자를 압축,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5 시안산류의 형광염색기체 (Cyanocriate fluorescent dye vapor)에 의한 지문현출 방법

범죄현장에서 유류된 지문을 쉽게 현출할 수 있는 “시안산류의 형광염색기체”를 표면에 퍼지게 하여 그 자체가 지문의 수분과 기름기에 반응하게 한 다음 그 지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동결시켜지게 하는 기법이 개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이 유능한 수사관이나 수사중에 따르는 행운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진보된 장비들은 범죄수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현대사회의 경찰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US. NEWS & WORLD REPORT('94. 7. 11)
조선일보('94. 8. 3일자) 참고

□ 일본 경찰청, 「'94경찰백서」 각의(閣議)에 제출

일본 경찰청은 '94년판 「경찰백서」를 지난 7. 22일 일본 각의에 제출하였는 바 동 백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목표로」라는 부제로 제1장에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와 경찰활동」을 특집으로 게재, 지역경찰의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요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을 수호하는 경찰활동

지역경찰의 핵심인 교번(파출소), 주재소는 범죄의 예방·검거차원을 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는 「생활안전 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상담실 등 적절한 대민 봉사시설이 요구되는 만큼 최대한의 시설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지역안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치안수요에 못미치는 경찰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방법협회원, 방범지도원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케 하므로써 범죄, 교통사고, 폭력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는 현 사회의 범죄, 사회문제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꾀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홍보강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

이외에도 일본경찰청에서는 최근 외국 경찰기관들이 교번(파출소)을 비롯한 자국의 지역 경찰제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방침으로 있다.

□ 일본경찰, 총포관리대책 강화

일본경찰은 폭력단의 총기 사용 및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행강도 등 강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무기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자발적인 총포 신고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93년 7월 15일 한국경찰에서 수시 운영하고 있는 「총포도검등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 제도를 도입, 「자수감면규정」을 삽입한 개정 「총도법」을 시행해 오던 중

- 지난 8월말, 개정 「총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권총 회수결과를 집계한 바, 자진신고 건수가 140건(160정)으로 개정전의 29건(39정)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하여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자수감면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경찰청은 부임후 얼마 안되어 발생한 세천(호소가와)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총기사고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 국외로부터 폭력단 등을 통해 유입되는 총기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국제공조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향만과 공향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 총기 밀수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동경에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등의 관련 책임자를 초청한 가운데 총기대책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느 건물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 인사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신경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변화로 맞을 수 없다. 나부터 변화와 실천이 결국 큰 변화, 신교육의 시작인 것이다

◁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 용역연구 공모제 실시

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부터 8월 23일까지 치안정책 용역연구 희망자를 공모하였다. 공모대상과제는 연구소 지정과제 5건, 자유과제 8건으로서, 총 37명이 응모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신청서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시대변화에 따른 경찰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치안행정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고자 오는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1세기 경찰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21세기 경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이한기 전 총리의 기조강연이 있고, 김안제 서울대교수(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의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와 차용석 한양대법대 학장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 방안」 등 두개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위원 위촉

연구소에서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연구를 담당할 연구 위원 50명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다. 이들은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에서 강사이상의 직에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경찰 연구관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 및 연구위원〉

연구실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성명	학위	현직책
치안행정연구실	경찰임용제도 개선	이 유 준 (李裕竣)	서울대 행정학 박사	경찰대 부교수
		진 재 구 (陳在九)	"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실	지방화시대의 경찰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이 종 수 (李鍾秀)	영국 웨필드대 행정학 박사	연세대지역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실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성명	학위	현직책
치안행정연구실	국제화시대 경찰기능과 역할	남궁구 (南宮堧)	강원대 행정학 박사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사
	지·파출소 운영체제 쇄신	임학순 (任鶴淳)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이은구 (李殷九)	형가리국립학술원 경제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 체제 개발	하태권 (河泰權)	미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충북대 교수
		김영민 (金榮敏)	서울대 행정학 박사	인하대 조교수
	전투경찰제도 개선	민진 (閔振)	"	국방대학원 교수
		이송호 (李松浩)	미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수석연구원
범죄대책연구실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수사경찰체제 개선 방안	황정익 (黃政益)	동국대 법학 박사	청주대 강사
		양문승 (梁汶承)	"	동국대 강사
		천종철 (千宗喆)	연세대 법학 박사	경기대 강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수사구조합리화 방안	박기석 (朴紀錫)	한양대 법학 박사	한양대 강사
	경찰범죄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	박영렬	미 U C L A 대 교육학 박사	LA 고등법원 대배심원
		이현우	미 시간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한양대 교수
		전희락 (全熙洛)	중앙대 신문학 박사	중앙대 강사
		김형만 (金炯晩)	일본명치대 박사	경기대 강사

◁ 연구소 소식 ▷

연구실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성명	학위	현직책
범죄대책연구실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대처방안	권기창 (權紀昶)	한양대 행정학박사	한양대 강사
	민간방범역량강화방안	주희종 (朱熙鍾)	미텍사스대 범죄사회학박사	고려대 강사
		박병식 (朴秉植)	일본명치대법학박사	동국대 강사
		임형진 (林炯眞)	경희대 정치학박사	경기대 강사
교통대책연구실	운전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	이순철 (李淳哲)	일본 오사카대 철학박사	도로교통안전협회 안전운전연구실장
	교통사고처리의 신뢰성제고방안	김홍상 (金鴻詳)	독일 칼스루에대 교통공학박사	명지대 교통공학과 조교수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정책평가	설재훈 (薛載勳)	서울대 교통공학박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음주운전사고대책과 처리시스템확립방안	이광훈 (李光勳)	일본 대학원 교통공학박사	서울시정개발연거원 책임연구원
	교통경찰행정의 발전방안	김광식 (金洸植)	미워싱턴대 도시계획학박사	성균관대 교수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여론조사기법의 활용 방안	노규형 (盧圭亨)	뉴욕대 정치심리학박사	R & R 대표
		박상준 (朴商準)	미시간대 경영학박사	서강대 강사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김유환 (金裕煥)	서울대 법학박사	중앙대 법학과 조교수
		홍준형 (洪準亨)	독일 Gottiage 법대 법학박사	아주대 법학과 조교수
		김창록 (金昌綠)	서울대 법학박사	부산대 강사
		이윤호 (李潤鎬)	미시간대 범죄학박사	경기대 교정학과 조교수

연구실	연구과제명	연구원		
		성명	학위	현직책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사회안정기능의 재정립 방안	한상암 (韓相岩)	미샘휴스턴주립대박사	동국대공안행정연구소
	급진세력의 통일운동에 대한 실태 연구	김승호 (金承鎬)	한양대교육학박사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시운 (李時運)	서울대국민윤리학석사	승의여전강사
	국제테러리즘의 전망 및 대책	손동권 (孫凍權)	독일Bonn대학법학박사	경찰대조교수
		김석용 (金錫用)	건국대정치학박사	국방대학원교수
	과학기술개발연구실	경찰장비관리, 운용실태 분석	박국흠 (朴國欽)	고려대행정학박사
이정준 (李楨駿)			고려대행정학박사	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조교수
정진욱 (鄭鎭旭)			서울대계산통계학박사	성균관대교수
경찰장비와 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김기윤 (金基允)	고려대경영학박사	광운대교수
		이경석	파리7대학 전산학박사	산업연구원 전산실장
		이승훈 (李承訓)	한국외국어대 정보관리학석사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정보통신기술발전과 경찰조직의 변화		오해석 (吳海石)	서울대 전자계산학박사	승실대공대교수
		김철호 (金澈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국방정보체제연구소 정보·통신교육센터부장
		김용섭 (金用燮)	승실대학교 정보산업학석사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관서별·기능별 장비보유모텔개발		변승남	미시간대공학박사	경희대공대조교수
		하연섭 (河連燮)	미인디애나대 정책학박사	연세대강사
		정익재 (鄭益在)	미뉴욕대행정학박사	산업대전임강사

연구소의 딜레마

치안연구소가 확대개편된지도 4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 그러하듯이, 또 어느 연구소에서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노정할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치안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며, 국책 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연구소에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미국 MIT대의 셰퍼드(Shepard)교수가 분석한 「연구소의 딜레마」가 많은 연구소가 겪어왔고 앞으로 치안연구소가 부딪히게 될 문제점들을 대체로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研究所 : 現在를 위한 部署인가, 아니면 未來를 위한 部署인가?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부서로 간주되고 있으며, 어떤 연구소는 기업의 홍보적 차원에서 설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소에서 '현재'가 더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연구소에서 미래의 신제품·신공정이 개발되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재중심의 기술지원업무·고장해결·품질관리 등에 얽매이게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연구관련 활동의 균형적 포트폴리오가 현재/미래라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결부하여 잘 구성되어야 한다.

2) 研究所 또는 科學者 : 組織所屬(Local)의 직업인가, 아니면 汎組織的(Cosmopolitan) 學究人인가?

연구자 또는 과학자들은 일반적 조직구성원과는 달리 자신의 전공학문분야에 더 많은 귀속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회사의 직접적 목표달성보다는 학문 또는 지식에의 공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즉 기업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다는, 얼마만한 학구적 가치가 있느냐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갈등을 기업내에서 일으키게 된다. 학구적 가치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한편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기업목표달성이나 가치를 따지게 되면 단기적 목표에 치우쳐 획기적 기술혁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있다.

3) 研究結果 : 숨겨야 될 機密인가, 아니면 널리 알려야 할 業績인가?

기업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얼마나 빨리 투자결과가 상업화되느냐와 함께 경쟁기업보다 얼마나 빠르게 신제품 등의 도입이 가능하냐이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를 최종 순간까지 감추려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하루바빠 공표하여 학구적 업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영층과 연구자간의 갈등이 적절한 대응반응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4) 研究豫算 : 企業중심인가, 아니면 研究所중심인가?

기업은 1년단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소요된다. 경영층은 연구결과가 매년 정확한 진도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데에 실망하는 데 반해 연구소측은 경영층이 연구개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심한 좌절을 느낀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간격은 많은 경영관리문제를 일으킨다.

5) 權限 : 委讓할 것인가, 아니면 共有할 것인가?

기업경영의 일반적 원리와 전문가집단에 대한 경영원리중 어느 것이 연구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긴다. 일반경영 원칙과는 달리 연구소에서는 권한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상호적 입장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성과는 과학적 견지에서 평가되며 연구자는 정직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상하관계가 아닌 선후배관계의 권한행사를 원하며 경영층이 연구자의 조직순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연구자는 끊임없이 좀더 큰 자율을 바란다.

6) 研究組織 : 프로젝트 조직인가, 아니면 機能的 조직인가?

일반적으로 연구소 조직이 일반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조직화해 가는 강한 추세를 보이나 이는 창의성·열성 및 조직내외의 협조체제에 적지 않은 문제가 되어 있다. 최근에는 매트릭스 조직이 해결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이 얼마만한 비율로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포용하느냐이다.

7) 研究者管理 : 充足的인가? 逆行的인가?

위압적 지도성(Leadership)은 반감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며 방임적 지도성은 불만과 낮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훌륭한 지도성은 학구적으로 선도력 있게 창의적이며 박력있게 열성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에 성공적인 사람이 연구관리 책임자로서 성공적이라는 보장이 다른 경영부서와 달리 많지 않다. 게다가 연구업적에 대한 태도가 일반 경영인과 달라 동기부여와 장려급제도에 문제가 종종 생기게 된다.

8) 非專門的 研究從事者 : 身分的 階級(Caste)인가 아니면 職業的 階級(Class)인가?

매트릭스조직이나 프로젝트조직에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직 기능집단이나 보조집단 사이에는 종종 갈등이 생긴다. 전문가 집단은 선생이나 상위계급으로 행세하면서 비전문가집단을 학생이나 하위집단으로 천시하는 풍조가 가끔 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속물적(俗物的) 무능한 연구개발자들이 자신의 무능이나 낮은 업적에 대한 심리적 대상행태(心理的 代償行態)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연구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반복적이며 귀찮은 잡무까지도 거부하는 태도를 갖기도 하여 연구소내외의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 분석 / 연구소의 딜레마 ▷

9) 專門的 研究者 : 選擇된 精銳(Elite)집단인가, 아니면 無產層(Proletariat)인가?

일반적으로 전문적 직업이란 봉사와 헌신을 뜻하며 높은 윤리의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하여 박애주의(博愛主義) 또는 이타주의(利他主義)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보통사람들에게 이들 전문인은 권력이나 부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성직자와 같이 세속적인 상업주의에 물들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의 전문인 집단, 특히 변호사, 의사집단과 같이 상업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연구자집단에 대한 태도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집단이 노조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연구소 관리를 고급 연구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 연구원의 활동을 규정이라는 틀 속에 집어 넣어야만 하는가
- 연구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가
- 뛰어난 업적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여야 하는가
- '엘리트'를 어떻게 조직에 붙들어 두어야만 하는가

일등에게는 일등 정보관리시스템이

기업들의 정보관리시스템은 처음에는 정형적인 계산업무(EDPS)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환경의 변화, 각종 정보기기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정보시스템 기술(技術)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시스템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MIS :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SIS : 전략정보시스템)이 되었다. SIS란 라이벌을 따돌리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인데, 한 때 주목을 받아왔던 MIS가 실패한 원인으로는 목적이 불분명했다는 점과 정보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구비되지 못했던 점이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에는 정보기기의 비용이 낮아지고 있고 정보통신, 데이터시스템이 발달하는 등 SIS와 같은 복잡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최 신 판 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직무에 해당됨.

〈판례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1994. 3. 22 제1부 판결, 93도2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판결(공 1984, 1760)

1987. 7. 22 선고, 87도1472판결(공 1987, 1677)

1989. 9. 12 선고, 89도597판결(공 1989, 1530)

나.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판결(공 1989, 1319)

〈판결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9. 23 선고, 93노900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여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닌 것이다(당원 1989. 7. 25. 선고, 89도890판결 참조).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제1심판시 수재기간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든가 피고인 강일석이 그 기간중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제1심사에서의 자백이나 일부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정명훈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 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여기거나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사문서위조, 동행사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를 모사전송한 경우 문서의 행사에 해당됨.

〈판례요지〉

사진이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1994. 3. 22 제2부 판결, 94도4 사문서위조, 동행사)

참조조문

형법 제234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전원합의체판결(공 1989, 1418)

1992. 11. 27 선고, 92도2226판결(공 1993상, 316)

〈판결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 12. 10 선고, 93노1084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체성물산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 충무지점의 외환업무담당자인 공소의 이상팔에게 그 복사본을 제출하고,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어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한 견해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

◁ 최신판례 ▷

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조문서 행사죄의 객체나 그 행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 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문보도된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함.

—〈판례요지〉—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 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1994. 4. 12 제1부 판결, 93도353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제1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판결

—〈판결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 선고, 93노102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업무방해

시장번영회에서 제정, 시행중인 시장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됨.

◁ 최신판례 ▷

〈판례요지〉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94. 4. 15 제3부 판결, 93도2899 업무방해)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20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판결(공 1986, 3159)
- 1987. 1. 20 선고, 86도1809판결(공 1987, 324)
- 1992. 9. 25 선고, 92도1520판결(공 1992, 3052)

〈판결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 9. 16 선고, 93노315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

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권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량진행중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판례요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994. 4. 26 제1부 판결, 94도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판결(공 1984, 950)

1992. 7. 28 선고, 92도1137판결(공 1992, 2699)

1992. 8. 18 선고, 92도934판결(공 1992, 2792)

〈판결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1. 18 선고, 93노186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횡단보도 2차선 상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상을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안유현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은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죽고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이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다툼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환자에게 벌침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됨.

〈판례요지〉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말한다.

나.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94. 4. 29. 제3부 판결, 94도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942판결(공 1988, 202)

1992. 5. 22 선고, 91도3219판결(공 1992, 2057)

1993. 8. 27 선고, 93도153판결(공 1993하, 2683)

나.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판결(공 1992, 3194)

〈판 결 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노296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판결 등 참조),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그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심 판사와 같이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참조).

또한 벌침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시술행위가 설사 민간요법으로 행하여져 왔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는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설사 벌침의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최신판례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제1심판결 선고후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음.

〈판례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회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1994. 5. 10 제1부 판결, 94도4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642판결(1994상, 1224)

1994. 3. 22. 선고, 93도3473판결(공 1994상, 1373)

〈판결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 14 선고, 93노3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첨부 별지 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고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3. 12. 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 공포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회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도수표중 주문 기재의 수표 1매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서까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위 법조 소정의 수표 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그 나머지 상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의 소리 귀 기울일 치안행정모니터제 실시

취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경찰행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찰시책 및 행정에 관한 치안행정모니터 의견을 정기적으로 모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치안행정모니터의 선정 국민여론을 수렴함에 있어서 일부계층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로 전국의 실제 인구에 비례해 총 660명으로 구성

치안행정모니터의 활동 자신의 거주지 또는 생활주변에서 경찰시책 및 행정에 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경찰청 공보관실에 우송

치안행정모니터의 활용 월 1회씩 경찰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당면경찰시책에 대한 주제를 지정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지정과제”, 경찰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직접 작성하는 “임의 의견제시” 등 3가지 방법을 위주로 여과없는 시민의 소리를 수렴